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동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291 발의연월일: 2025. 1. 7.

발 의 자: 장동혁·조배숙·곽규택

김상훈 · 김도읍 · 박덕흠

김예지 · 서범수 · 유상범

인요한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가석방 시에는 특정범죄자 뿐만 아니라 특정범죄 이외의 범죄자에 대해서도 전자장치 부착을 통해 보호관찰과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가종료되는 사람 등에 대해서는 특정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만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고, 특정범죄 이외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대해서는 부착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그러나, 이들에 대한 관리·감독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특정범죄자 해당 여부와 관계없이 전자장치 부착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특정범죄 이외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가종료·가출소되는 경우에도 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 기간의 범 위에서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3조 제1항 개정).

법률 제 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중 "제9조에 따른 부착명령 판결을 선고받지 아니한 특정 범죄자로서 치료감호"를 "치료감호"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9조에 따라 부착명령 판결을 선고받은 가종료자등은 제외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종료 등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은 이 법 시행 당시 치료감호 또는 보호감호의 집행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3조(가종료 등과 전자장치 부착)	제23조(가종료 등과 전자장치 부착)
①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①
제37조에 따른 치료감호심의위	
원회(이하 "치료감호심의위원	
회"라 한다)는 제9조에 따른 부	<u>치료감호</u>
착명령 판결을 선고받지 아니한	
특정 범죄자로서 치료감호의 집	
행 중 가종료 또는 치료위탁되	
는 피치료감호자나 보호감호의	
집행 중 가출소되는 피보호감호	
자(이하 "가종료자등"이라 한	
다)에 대하여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또는 「사회보호	
법」(법률 제7656호로 폐지되기	
전의 법률을 말한다)에 따른 준	
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	
하여 보호관찰 기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전자장치를 부착	
하게 할 수 있다. <단서 신설>	
	따라 부착명령 판결을 선고받은
	가종료자등은 제외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